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48 발의연월일: 2020. 9. 16.

발 의 자 : 인재근·양정숙·소병훈

최혜영 · 서영석 · 고영인

최종유 · 최연숙 · 남인순

정춘숙 · 윤미향 · 권칠승

우원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을 은폐하기 위해 보존식 일부를 훼손·폐기하고, 식재료 거래 내역을 허위로 작성 및 식중독 원인조사 전 내부소독을 하는 등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음.

그러나, 현행법에서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과 대료만 부과할 수 있어, 처벌 수준이 낮고 법 이행에 대한 성실한 이 행을 담보하지 못하여 식중독 원인조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경 우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,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7조제1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86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97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	
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 </u>	10. 제86조제2항·제3항에 따른
	<u>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·방</u>
	해 또는 기피한 자